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623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권준상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26.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19가단23955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B, C는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10. 29. 접수 제4875호로 마친 각 지분 9분의 2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4. 18. 접수

제15046호로 마친 각 지분 9분의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을 대표한 K가 관련 민사사건 계속 중에 원고 및 P 등을 만나서 ‘3억 7,500만 원에 합의하고, 위 합의서로 모든 것을 결정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화해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가 관련 민사사건 계속 중인 2017. 7. 17. G의 동생인 P와 사이에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3억 7,500만 원. 상기 위 합의서로 모든 것 결정함’이라고 기재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들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K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K가 피고들을 대표하여 관련 민사사건 계속 중

이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다가,¹⁾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어 위 합의서만으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권리 포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강희석, 판사 오연정

별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서울 영등포구 대 204.3㎡

2. 건물

서울 영등포구 백돌조 평층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6가구)

1층 111.97㎡

2층 104.47㎡

3층 100.6㎡. 끝.

1) K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K가 원고 및 G에게 3억 7,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 및 G이 K에게 그 점유부분을 인도하기로 합의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 K가 피고들과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위 3억 7,5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